

2023년 1월
노 · 사 협의체 회의록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의 4항)

결 재	안전관리자	근로자대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현장명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제2공구)	개최일	2023년 1월 3 일 화요일
회의장소	회의실	참석인원	8명

노 · 사 협의체 위원장				
사용자대표	도재선		서천건설	유지환

사용자위원		
서천건설	박윤태	

근로자위원		
서천건설	최포아옹	

사용자위원		
안전관리자	이홍전	

근로자위원		
서천건설	정성훈	

사용자위원		
보건관리자	이유리	

근로자위원		
서천건설	김별윤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 · 운영에 관한 특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24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3조, 제64조, 제65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93조

구성

사용자 위원	근로자 위원
①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② 안전관리자 1명 ③ 보건관리자 1명(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업으로 한정) ④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①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다만, 명예산업안전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③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 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심의 · 의결 사항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 사항

-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023년 1월 3일 화요일

노 · 사 협의체 회의록(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의 4항)

■ 심의 사항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동절기 대비 동절기 재해 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의 건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사항 없음

③ 안전 ·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23년 교육계획 작성 및 교육계획에 따른 교육 시행증
- 신규채용자 교육 실시시간 오전 8시까지, 오후 2시까지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측정주기, 6개월▶3개월 변경 실시중, 신규 공종 발생시 작업환경측정 실시의 건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신규채용자 혈압 관리,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 보호근로자 관리의 건

⑥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사고 발생 시 즉시 유선보고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발생 사례 및 당 현장의 아차사고 사례 공유 / 대책 수립에 관한 건

⑧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 기구 ·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기계 · 기구 매월 정기 점검 및 신규 기계 · 기구 점검에 관한 건
- 사용금지 스티커 발부 조치기한내 지적사항 미조치시 사용중지 및 반출

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혹한기 대비 한랭질환자 발생 예방에 관한 건

■ 의결 사항

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난방기기 화재 예방을 위한 난방장치 사용전 점검 철저, 작업전 작업구간 정비 철저(성애제거, 눈제거, 얼음 제거 철저)
(찬성 : 8명 / 반대: 0명)

②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사항 없음
-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위원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 요청 사항 없음
(게시 장소 : 안전교육장, 근로자휴게실, 근로자식당, 모바일(현장통) 전달사항)
(찬성 : 8명 / 반대: 0명)

③ 안전 ·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연간 교육 계획에 따라 정기 교육, 특별교육 등 실시
- 신규채용자 교육 진행시 교육 시작 시간 준수 (교육 실시시간 오전 8시까지 오후 2시까지)
(찬성 : 8명 / 반대: 0명)

④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산안법상 측정 주기는 6개월/1회 ▶ 3개월/1회로 시행 중(작업환경측정을 통하여 개선활동 실시)
- 근로자대표 또는 근로자위원 요구 시 추가적인 측정도 가능 함 전파
- 현장내 주요 작업(터널) 작업환경측정 실시 완료, 주기에 맞춰 진행 예정
게시 장소 : 안전교육장, 근로자휴게실, 근로자식당, 모바일(현장통) 전달사항 전파)
(찬성 : 8명 / 반대: 0명)

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고혈압(150이상), 고령근로자- 의사소견서 및 근로자 투입승인 요청서 제출 후 작업 투입 배치전, 특수 건강진단 결과 제출(6개월 전 실시한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제출시 제외)
- 신규근로자 작업 투입 전 배치전 또는 특수건강진단 결과 제출 必
- 보호근로자(고혈압자, 고령자 등) 및 직업병 유관찰자 또는 유소견자는 수시 상담 진행 중
(찬성 : 8명 / 반대: 0명)

⑥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사고 발생 시 즉시 유선보고
- 비상사태 대비 훈련에 따른 상황 전파 및 이행(현장통 등을 이용하여 전파)
(찬성 : 8명 / 반대: 0명)

■ 의결 사항

⑦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발생 사례 교육 실시
- 동일 공종 등 재해 사례 및 개선대책 전파 교육

(찬성 : 8명 / 반대: 0명)

⑧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시 안전관련 미준수시 사용금지 스티커 발부, 발부 후 안전보검팀 조치확인 후 작업재개, 스티커 임의 제거 및 임의 작업실시시 해당 공종 작업 중지 후 교육 등 실시 예정
- 월 1회 공도구 및 슬링밸트 등 정기점검 / 반입 전 점검 / 수시 점검 실시 중
- 임의 반입 사용 금지 사용시 즉시 사용 중지 / 점검필증 부착된 기계·기구에 한하여 사용
- 정기 점검 후 승인필 스티커 훼손시 금지, 사용중 스티커 훼손은 즉시 조치 후 사용

(찬성 : 8명 / 반대: 0명)

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혹한기 대비(2월 말까지)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넥워머, 핫팩, 귀덮개 지급 요망

(찬성 : 8명 / 반대: 0명)

■ 협의 사항

①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 분기별 비상사태 훈련 시행중(22년 11월 화재예방 비상사태 훈련 시행 완료, 23년 2월 진행 예정), 각각 부여된 임무 내용 숙지
- 당 현장 밀폐공간 해당없고, 옥외 작업으로 대피로 시야 확보 매우 양호

②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오전작업 시작시간 오전 6시 50분 시작 17시 30분 작업종료
오후작업 시작시간 오후 6시 시작 오전 6시 작업종료(오후작업 근로자 장약 후 추가 TBM 별도 실시, 월요일 오전작업 근로자 장약 후 별도 TBM 실시, 실시후 사진 전송 必)
- 당 현장 옥외작업 및 휴대전화 불가 지역 없음으로 휴대전화 사용가능함
(터널 근로자 휴게실에 통신사 중계기 설치, 추후 요청시 추가 설치 예정)
- 발파시 근로자 대피 완료여부 팀별 확인(무전기 사용중)

③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 모바일 안전관리 시스템 현장통 운영 철저(예 : 위험치워줘, 위급사이렌, 위험성평가 등)
-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9TO5 일일공정 안전회의, 1-3-5안전문화 활동 실시 철저 전파
- 건설장비를 이용한 작업시 근로자 통제 및 작업계획 수립, 준수 철저

④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월 1회 위험성평가(한양 위험성평가 HRA) 실시 변경, 매월 25일까지 제출
- 신규 공정 작업시 사전위험성평가 실시 및 단기간헐적 작업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평가 미제출시 작업불가
-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교육장, 근로자휴게실, 근로자 식당 및 모바일(현장통) 등 게시 전파 중
- 모바일 현장통 운영중이며, 근로자가 확인 및 작업시 위험요인 파악 할 수 있도록 근로자 적극 참여 독려

⑤ 기타 사항

- 2월 우수근로자 포상 예정(현장통 사용 근로자 등)
- 터널 작업자 안전대 짐줄 교체(현재 짐줄 약 2m 변경 후 짐줄 약 1m)

■ 건의 사항(근로자의 의견청취)

건의자

건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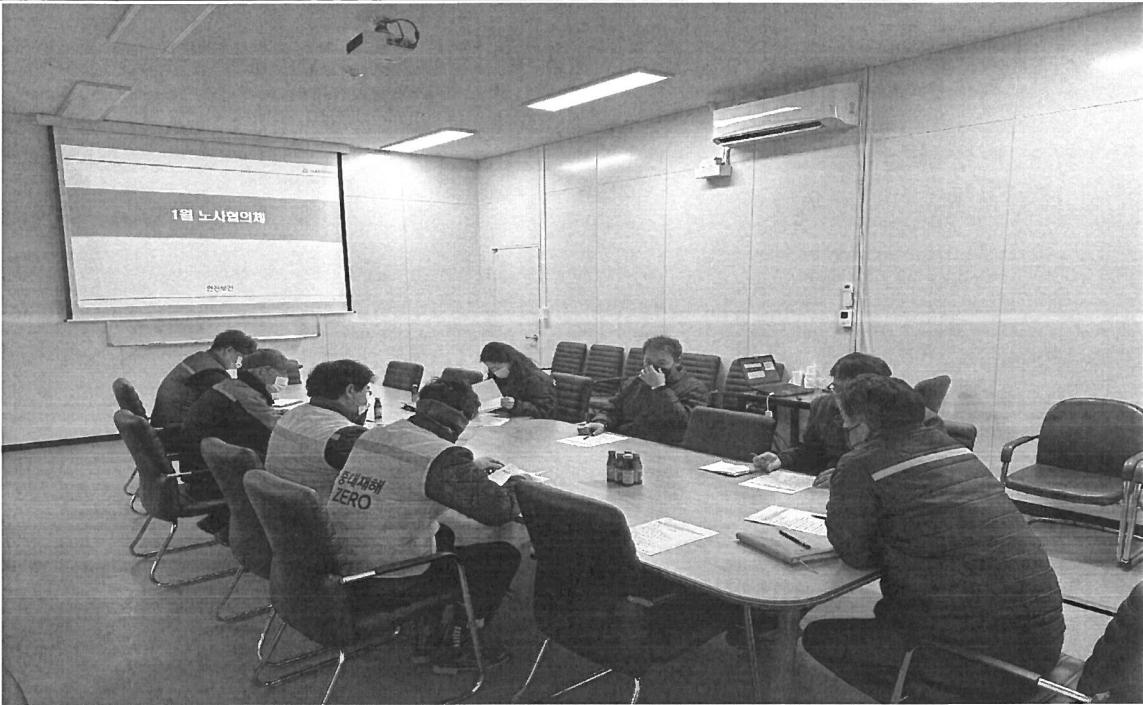
처리방법

채수필

터널 근로자 대기실 주변 화장실 설치

설치 예정(다른 현장 전용 또는 직접 설치 등 현장내 설치 장소 등 확인 중)

사진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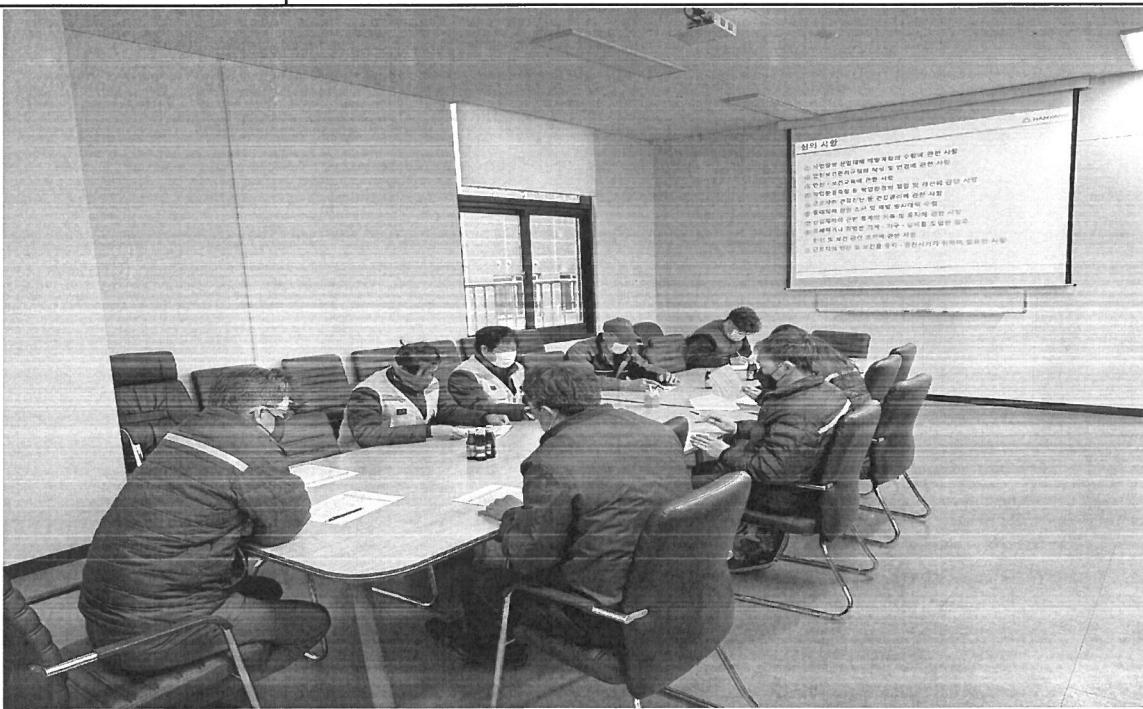
날짜

2023년 1월 3일 화요일

비고

내용

노·사 협의체 회의



날짜

2023년 1월 3일 화요일

비고

내용

노·사 협의체 회의

근로자 위원 위촉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64조)

소속 : 서천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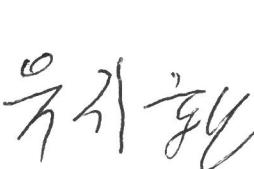
직위 : 티널

성명 : 김 병권

귀하를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제2공구) 현장
노·사 협의체 근로자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23년 / 월 일

노·사 협의체 근로자 대표

이기현 (서명)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제2공구)